

대구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1304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4. 접수 제89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수정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 886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이하 '대지급금'이라 합니다),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27조).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외 B(이하 'B'라 합니다)는 경북 칠곡군 E 소재 'F'를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G 등(이하 '채불근로자들'이라 합니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자

입니다.

피고 A(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2002. 3. 22. B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여 공유하고 있다가 2021. 6. 4. B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채불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채불근로자 G와 H은 2020. 10. 31. B의 사업장인 'F'에서 퇴직한 후 임금채권보장법¹⁾이 정한 바에 따라 B를 상대로 채불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발급받은 후 원고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사업주확인서 및 집행권원). 이에 원고는 사업주 B를 대신하여 2021. 7. 27. 채불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 상당액 합계 16,339,420원을 지급한 다음, B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3. B의 사해행위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3. 생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마. 생략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가. 피고와 B의 공유지분 증여계약 체결

한편 피고와 B는 2002.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수한 후 2002. 3. 22.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채불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채불²⁾한 이후인 2021. 6. 4. 피고에게 자신의 공유 지분을 증여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1)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2) 채불근로자들은 2020. 10. 31. 퇴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사업주확인서 및 집행권원).

원고는 채불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급금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것에 대비하여 분기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불사업주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요트, 선박, 골프·콘도 회원권, 무채재산권, 영업권 등의 재산조회 결과를 제공받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제21조 3).

원고는 이 사건 채불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B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J 등 3명에게 B를 대신하여 함께 10,340,800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2쪽).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에 따라 2020. 10. 15. 국토교통부로부터 B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재산조회회보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2020. 10. 2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였다가 B로부터 그 당시까지 발생했던 대지급금 미수금을 모두 변제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해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6쪽).

원고는 2020. 10. 15. 이후에도 B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골프·콘도회원권, 급여채권 등 재산회보를 의뢰하고 제공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달리 확인된 재산은 없었습니다(갑 제4호증 사업주 재산조회회보). 이

3)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제21조(재산조사 등)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해당 사업주로부터 미수금을 강제회수 할 것을 대비하여 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때
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최초 지급한 때

② (중략)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재산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해당 분기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B는 2020. 12.경 채불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불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B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채불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즉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사업주확인서 및 집행권원). 따라서 B는 이러한 임금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1786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일응 추정되므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전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액(원금)은 원고가 채불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합계액인 16,339,42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일부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불가분적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자체가 회복되더라도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말소등기를 청구합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